

의안번호	2214564
의 퇴 인	이용우의원
회 답 일	2025.12.3.
추 계 번호	25B64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제4항 (하수급인 등의 지위)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8항·제9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9항,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4조제9항의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금”으로 보고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봄(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34조제9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제9항) <u>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u>	
		제9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카드신고시스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연계하여 이용하여야 함(제10항 신설)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32조제4항 (하수급인 등의 지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4조제9항·제10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2. 상세 사유

□ (안 제32조제4항)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해서도 동법 제34조제9항¹⁾을 준용하도록 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대여금을 청구·수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현재 공공부문 발주 공사에 활용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스템 이용량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청구·수령하게 될 전자청구 물량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능의 범위와 내용, 정보화전략 계획(ISP) 수립여부 등 추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34조제9항 및 제10항)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에도,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²⁾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1) 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제9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2) 50억원 기준은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300억원,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100억원,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50억원임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되는 하도급대금 중 건설근로자 임금 부분에 대하여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도록 의무화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시스템 이용 증가 및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에 따라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 부칙 제3조는 민간발주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화를 법 시행 후 2년에 걸쳐 도급 금액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부터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연도별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물량과 이에 따른 시스템 이용량을 예측하기 어렵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등은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능의 범위와 내용, 연계 방식, 정보화전략(ISP) 수립여부 및 재원부담 구조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현재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조달청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비용은 31.3억원, 2025년 기준 유지비용은 6.9억원 수준임([참고자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nabo.go.kr

[참고자료 1]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업개요

조달청 제출자료

1. 사업개요(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 (개요) 공공사업(건설공사 및 SW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 대금 청구·지급(원·하도급 및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 하도급계약 체결 등
- (업무범위) 공공 건설공사 및 SW 용역의 하도급거래
- (건설공사) 의무이용(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 (SW용역) 임의이용
- (이용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나라장터 등록 수요기관
- (주요기능) 대금 청구·지급, 하도급 계약, 실적증명서 발급
- (이용현황) '24년 11,550개 기관, 90,295개 업체, 대금지급 실적 66.6조원

(단위 : 개, 억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주기관	2,919	4,592	6,788	8,648	10,287	11,550
이용업체	38,291	54,829	67,235	76,254	83,755	90,295
대금지급	276,519	434,464	507,149	557,678	613,316	666,112

- * 공공 건설공사 도급업체('19.6월) 및 발주기관('20.5월) 이용 의무화로
「건설사업기본법」 개정 「전자조달법」 개정
이용량 급증

2. 시스템 구축 현황

□ '13.12월 구축, 고도화 2차례('16년·'21년) 및 자체개선('20년) 추진

《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금액	비고
2013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839,000	최초 구축
2016	하도급지킴이 기능 고도화 사업	625,923	1차 고도화
2020	자체 개선	-	자체 개선
2020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 ISP 수립 사업	338,300	2차 고도화 ISP
2021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 구축 사업	1,330,000	2차 고도화
합계		3,133,223	

3. 운영기관(운영부서 및 인력)

□ (총괄)전자조달기획과, (유지·운영)전자조달지원센터, (상담)조달등록팀

담당부서	담당인력		담당업무
전자조달기획과	3명	5급(1) 7급(1) 실무관(1)	하도급지킴이 운영 총괄 및 제도개선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 처리
전자조달지원센터	7명	민간위탁(7)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유지·운영 및 기능개선 하도급지킴이 이용관련 기술지원(원격상담)
조달등록팀(콜센터)	14명*	실무관(14)	하도급지킴이 이용관련 전화상담

- (산출기준) 전체 상담인원×(하도급 상담건/전체 상담건) = 106명×(156,117건 / 1,154,409건) ≒ 14명

4. 구축·운영 비용

□ (구축·고도화)3,133,223천원(구축·고도화 2,794,923천원+ISP 338,300천원)

□ (유지·운영) 830,430천원/연('26년 예산안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유지비	운영비	합계
'26년 예산(안)	279,400	551,030	830,430
'25년 예산	279,400	406,888	686,288

[참고자료 2]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및 전자카드제도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요

- (개요) 건설사의 대금 유용을 원천 방지하고, 발주자가 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효과를 구현하는 시스템
 - 대금 청구 시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구분하고, 대금 지급 시 건설사가 자신의 몫만 인출하도록 계좌를 구분

<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 흐름도 >



- (운영현황) 3천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초과하는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 중이며, 민간공사에서는 자율 사용 중
 - (공공)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중기부), 체불e제로(철도공단) 등
 - (민간) 노무비닷컴, 이콘 등
- (관련예산) 해당 없음

2. 전자카드 제도

□ (개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근로일수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이를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제도

○ **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고용부 소관)

□ (운영현황) 규모가 큰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1억원 이상 공공공사, 50억원 이상 민간공사에서 적용 중

□ (관련예산) 해당 없음